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 목표 10%

지경부, 2%로 시작해 2020년 10% ... 태양광은 할당량 별도 부과키로

주요 발전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이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월19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RPS 공급의무자로 명시했다.

해당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기업,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발전기업으로, 국가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비율은 2012년 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매년 0.5%p씩 높아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1%p씩 상승해 2022년 10%에 도달토록 했으며, 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또 태양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별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용했다.

의무공급 미이행금에 대해서는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고, 대수력과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을 2011년 10%에서 2020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건축물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됐으나 RPS는 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10월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순경 관련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